

第156回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1年11月9日(土)

場 所 參議院會議室

議事日程

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2.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査된案件

1. 1990年歲入歲出決算(계속).....1面
2.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계속).....1面

(零時 開議)

○委員長 金瑑泰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계속)
2.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계속)

○委員長 金瑑泰 議事日程 第1項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議事日程 第2項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이상 두 件을 일괄하여 上程합니다.

交通部長官 答辯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部長官 林寅澤 89년에 財政投融資特別會計로 計上된 50億원을 90年度로 事故移越한 후에 이를 다시 不用處理한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냐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金浦空港 주변에 거주하는 住民으로부터 航空機騒音 被害補償과 騒音低減對策推進을 요구하는 民願이 빈발하여서 이에 대한 騒音被害防止對策을 年次的으로 추진하고자 89년에 事業費 50億원을 空港管理公園에 財政融資해 주어서 우선 事業을 추진토록 하고 特例法을 制定하여 騒音發生原因者인 航空社로 하여금 騒音負擔金을 징수하여 償還할 계획이었습니다. 關係法 制定이 지연되어 부득이 事故移越되었고 다음해에도 法制定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제반 여건상 法制定이 지연되어 부득이 不用處理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不用事例가 없도록 豫算執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政府에서는 航空機 騒音發生原因者인

航空社로 하여금 一定比率의 騒音被害負擔金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航空法改正案을 國會에 今番 提出하였습니다. 이번 會期에 同法案을 議決하여 주셔서 空港 주변의 騒音被害補償 및 豫防對策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遞信部長官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遞信部長官 宋彥鍾 遞信部長官입니다.

崔鳳九委員님께서 質疑하신 廣告郵便葉書 發行問題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海外旅行을 案内하는 내용의 廣告郵便葉書發行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遞信部에서는 郵政事業의 赤字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983년부터 개인이나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廣告郵便葉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崔委員님께서 지적하신 廣告郵便葉書는 今年度 4月4日 韓國觀光旅行社로부터 郵便葉書에 海外旅行을 안내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신청이 있어서 이를 承認하여 두 種의 廣告葉書 各 50萬장씩 도합 100萬장을 발행하였으며, 廣告手數料로 1,000萬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廣告葉書發行時에는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의해서 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崔鳳九委員** 사소한 문제같지만 이것은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政府나 온 國民이 지금 過消費風潮때문에 經濟가 흔들리고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니까 다같이 일어나서 지금 過消費風潮를 우리가 추방하고 그 다음에 海外旅行도 억제해 가지고 國際收支도 개선하자 이런 것을 全國民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政府나 與黨이나 野黨이나 똑같이 하는데 사소한 것 같지만 郵便葉書에다가 이런 新婚旅行 海外廣告...

사실상 결혼하는 新婚夫婦들이 몇쌍이나 몇 %나 海外旅行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新婚旅行廣告는 違和感造成하는데 충분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은 돈벌이가 된다고 아무 것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廣告 自體가 郵政收入도 도모하면서 國益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廣告를 앞으로 게재해가지고 앞으로 國民들로부터 政府政策에 대해서 이런 불신을 사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없도록 長官께서 깊이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遞信部長官 宋彥鍾** 명심하겠습니다.

過消費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朴 實委員**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遞信 郵政事業하는 것은 물론 公企業의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私企業과 달리 特殊性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업의 재산이라든지 收入에서 赤字補填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SOP가 있습니까? 內規가 있습니까? 關係規定이...

○**遞信部長官 宋彥鍾** 郵便法에 근거가 있고 그 法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國民들에게 건전한 소비에 危害를 줄 그런 염려가 있는 廣告物은 承認할 때 承認을 하지 말도록 法에도 規定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것을 아까 崔委員님 지적을 받고 내용을 따져보았는데 4월에 承認을 하면서 實務者들이 檢討를 좀 잘 못한 점이 있어서 물론 4월 당시에는 過消費가 그렇게 심각한 國民輿論의 문제는 되지 않았습시다라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承認을 할 때 더욱 신경을 써라 이렇게 內部的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朴 實委員** 이것은 過消費問題가 되니까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 內規나 그런 것이 나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法的根據하고 廣告를 취급하는 內規가 있으면 資料로 제출해 주세요.

公企業의 特殊性으로 보아서 遞信部같은 데서... 이 事案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遞信部 같은 데서 廣告倫理規定을 肅신수법해야 돼요.

국민이 내는 一般會計에서 다 돈을 대 주고 하는 이런 기업이 지금 廣告收入을 위해서 막 이렇게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內規라든지 法的根據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遞信部長官 宋彥鍾** 郵便法 21條의 2인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瑬泰** 科學技術處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科學技術處長官입니다.

民主黨 朴英淑委員님께서 放射性廢棄物 處分場과 관련하여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첫번째, 處分場候補地 선정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住民들의 同意아래 放射性廢棄物 處分場計劃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또한 住民들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質疑하셨습니다.

政府는 放射性廢棄物管理를 위한 敷地選定을 國民的 共感帶를 바탕으로 地域住民과의 合意過程을 통해 國民의 이해와 협조아래 公開的이고 民主的인 절차에 따라 선정하기 위하여 自願地域을 最優先對象으로 人文·社會技術的 여건을 고려하여 妥當性調查를 마친후 최종 敷地를 선정할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月末 公知하여 11月5日 마감한 自願申請은 약 42件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접수자료를 검토한 결과 國土綜合開發計劃 및 環境保全地域 등 法的으로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 지역과 地震 및 地質條件 등이 부적합 地域 등을 제외하면 의미있는 檢討對象 地域은 10個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大學校 人口 및 발전문제연구소에서의 敷地確保 및

地域協力方案을 또 動力資源研究所는 島嶼 및 廢鑛活用方案研究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研究는 11月末까지는 完了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自願地域에 대한 技術的 적합성을 검토하고 서울大學 및 動力資源研究所의 研究결과 발표 그리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들을 종합 분석하여 科學技術處로서는 今年中 候補數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과거 두차례에 걸친 政府의 과오를 반성하여 政府가 自願地域을 最優先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과 반드시 宿願事業과 연계하여 이 計劃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住民과의 협의 및 同意過程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 및 同意를 얻어야하는 住民의 범위는 候補數地의 地理的 조건 등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候補數地가 선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具體的으로 答辯드릴 수는 없으나 外국의 事例와 기존의 原子力發電所地域支援範圍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現地 住民과의 협의하에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9年 制定된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에는 原子力發電所의 支援地域은 原子力發電所로부터 半徑 5km 이내의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은 原子力發電所와 같이 稼動되는 施設이 아니라 단순한 정지되어 있는 保管施設이므로 사고의 가능성이 없어 사고에 대비한 지역 범위를 설정한 예는 世界的으로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이 建設됨으로써 있을 수 있는 住民들의 移動 및 地域社會의 영향 그리고 放射性廢棄物管理施設이 地域社會와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地方行政單位의 協議支援事業을 하고 있는 것이 世界的인 추세이므로 이를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정한 지역범위를 사전에 정하는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朴委員님께서서는 둘째로 放射性廢棄物管理數地 自願申請者의 人的事項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申請者들 중에는 數地로서의 技術的인 適合性이 判明되고 周邊地域住民들과의 協議가 이

루어질 때까지 非公開로 해 줄 것을 要請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地質 地形 등 處分場數地로서는 技術的인 檢討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全體 42個地域의 自願申請 사실이 밝혀질 경우 住民間에 갈등 및 騷擾 그리고 불필요한 社會不安이 惹起될 可能性이 높은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만 發表되는 것도 行政의 普遍性原則에 맞지 않는 사실에서 저희로서는 고충이 있습니다.

실제로 今年에만도 原子力과 廢棄物에 관한 國民意識調查過程에서 일부 住民의 격렬한 방해와 研究參與教授에 대한 御用教授로의 매도 및 火刑式을 갖는 등 暴力行爲가 있었으며 일부 公開討論會時 討論會場所에서의 극렬한 방해로 인한 討論會가 중단된 바도 있습니다.

또 原子力科學者들의 國民理解事業實施過程에서 身體的 위해를 받은 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개된 일부 地域에서의 自願申請住民과 反對住民과의 갈등으로 인한 마찰이 야기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4日字로 消印된 우편접수가 어제 7日로 접수되는 등 현재 접수과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에 있는 廢棄物處分場數地로서의 1次的 技術的 適合性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는 自願申請地域을 공개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간절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公開行政原則을 지켜 나가고 어떤 형식이든 즉 國會를 통하든 혹은 言論을 통하든 處理過程과 結果를 반드시 公開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最終候補數地住民과의 協議過程에서는 더욱 公開的인 行政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委員님들과 國民여러분들의 協力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로 朴委員님께서서는 서울大學 등 地方大學을 포함한 5個大學의 放射性廢棄物處分場候補地 選定과 관련된 研究用役의 結果와 動力資源研究所가 실시하고 있는 島嶼 廢鑛의 活用性調査結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結果를 밝힐 것을 要求하셨습니다.

현재 研究用役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最終報告書가 事業施行機關인 原子力研究所에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발표치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國民의 이해와 共感帶 형성을 위한 輿論收斂期間을 가지면서 可及的 今年內로 敷地選定이 되도록 可及的 11月 中에 研究結果를 제출해 주시도록 原子力研究所가 關係研究機關의 協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盧武鉉委員님께서 오늘 大統領께서 발표하신...

○朴英淑委員 長官님 조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動力資源部長官께 같은 質疑를 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넘겼는데 2030년까지 50基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그것은 이미 法的으로 아시는 것과 같이 原子力發電事業은 總적으로 動力資源部所管입니다. 우리 科學技術處는 原子力安全과 研究만 關係하고 있습니다.

○朴英淑委員 그러면 모르시지요? 그것은 動力資源部長官에게 물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겠습니다.

우리나라 國土의 크기로 보나 지형으로 보나 核發電所가 요구하는 여건으로 보나 50基... 현재 있는 것과 합하면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科學技術處의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순전히 理論的인 그리고 研究開發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신다면 앞으로 당분간... 당분간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科學技術者에 따라서 조금씩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까 動力資源部長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代替에너지가 劃期的으로 開發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全世界的 尖端技術水準을 포함해서라도 그 어느나라도 10% 이상을 代替에너지로 總當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또 동시에 原子力부분에서는 이 역사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미 인지도된 공개된 진실입니다만 原子力部門에서는 高速增殖爐라든가 또 앞으로 50년쯤 뒤로 전망되고 있는 核融合에 의한 發電이라든가 그러한 기술적인 發電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原子力發電의 理論的인 진전된 수준만 본다면 반드시 原子力發

電所의 크기가 그렇게 현재와 같은 크기로만 되지는 않을, 예를 들면 新型原子爐라든가 제일 먼저 理論的이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만 理論的인 진전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原子爐도 작아질 수 있고 그 敷地도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50基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1·2년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30年 혹은 40年을 長期間에 걸쳐서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은 충분한 토론과 연구의 결과를 갖고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朴英淑委員 그러니까 우리의 技術과 오늘의 施設형태로는 50基가 무리라는 것이 지금 長官님 말씀에 전제되어 있지요?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그것은 科學技術的으로 보기에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英淑委員 50基의 發電量이 30年後에는 필요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지금도 누누히 말씀드린대로 發電의 수요가 얼마가 되고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원칙은 動力資源部에서 결정하지 科學技術處에서는 연구하거나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朴英淑委員 그것은 豫算審議할 때 하기로 하고 아까 42곳 申請者에 대해서 公開 못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거기 관련된 문제에 質疑하겠습니다. 申請者의 具備要件은 무엇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저희 政府로서 公知한 것은 이미 朴委員님께서도 廣告文이나 記者會見內容을 보셨으면 이미 아시겠지만 그條件은 加入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에게 自願을 요청했습니다.

○朴英淑委員 그러면 현재 그 42個는 該要件을 갖춘 것이 전부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령...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 온 것 중에서는 세 個가 地域住民의 連署로 되어 있는 것이 세 군데, 企業에서 들어 온 것이 세 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個人입니다. 그것은 申請內容이 그런 것이고 지금 바로 현재 저희 事業施行機關인

原子力研究所 傘下 原子力環境센터에서 그 申請者의 身元確認 그리고 신청한 그 땅의 法律的인 진짜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그 땅이 확실한 것인지 그것이 爭訟 중에 있는 것인지 그러한 法律的인 要件 또 1次的으로 또 뭐 확정되려면 여러 段階를 거쳐야 됩니다. 時間도 걸리고... 그러나 1次的인 外形上의 地質的인 條件 이런 것을 현재 檢討하고 있습니다.

○朴英淑委員 그 1次的으로 地主들이지요? 그리고 보면 그 地主 住民의 同意를 얻어내는 것이 하나의 要件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 군데는 地域住民들의 連署로 들어와 있는 데가 세 군데...

○朴英淑委員 그 地域住民 몇 名의 連署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어떤 地域은 마을 전체가 한 것이 있고 어떤 두個 地域은... 현재까지 제가 報告 받은 것은 두個 地域은 마을 住民 全體가 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地域住民의 일부가...

○朴英淑委員 그러니까 제 質疑는 地域住民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을 내놓는 地域住民의 數地는 실지 그 施設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施設周邊의 住民들은 反對할텐데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 答辯 안해도 우리가 빨리 보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서울大 등 5個大學에 核廢棄物處分場과 候補地 選定에 관련된 用役을 주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專門家들중에 生態學者나 環境專門家 그러니까 生態學者가 몇 名이나 됩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제가 지금 資料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바로 答辯을 못드리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이미 朴委員님께서 資料要請 하실 때 전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英淑委員 그래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길래 지금 質疑를 드리는 것입니다.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제가 그 資料를 지금 여기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朴委員님께서 저희 科技處에서 드린 資料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열두時 半이에요!」하는 委員 있

음)

○朴英淑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法에 없는 열두時 半 會議를 하고 있습니까? 피곤하시면 가시라고 누가 그러던데.....

○趙洪奎委員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原子力發電所 50基 建設計劃을 모르셔서 말씀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動力資源部所管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所管이 아니라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趙洪奎委員 그런데 이것 基本計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關聯部處들끼리 서로 전혀 모르신 것입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計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所管關聯部處가... 제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官僚的인 思考에서 그러신지 전혀 모르고 ...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所管部處도 아니고 현재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그러면 전혀 所管部處끼리 關聯部處끼리 전혀 協議 안합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實務的으로 앞으로 그런 協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趙洪奎委員 이것은 實務問題가 아니라 基本的인 計劃일텐데 전혀 모르세요?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原子力發電事業은 어디까지나 動資部所管입니다.

○趙洪奎委員 아니 그러니까 動資部所管인데 動資部의 基本的인 計劃일텐데 科學技術處長官이 전혀 모르신 것인지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事務的으로 報告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事務的으로 報告 안하게 되어 있어요?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현재까지는 事務的으로 報告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아니 長官! 國務委員이시지요?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예, 그렇습니다.

○趙洪奎委員 國務會議에서 論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없습니다.

○趙洪奎委員 없으면 모르는 것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요.

○趙洪奎委員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관련된 部處의 것을 같은 다른 政府의 얘기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아니 관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趙洪奎委員 뭐가 관련이 아니예요?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原子力發電事業은 動力資源部所管이고 科學技術處는 原子力의 研究와 安全을 위해서 합니다.

○趙洪奎委員 아니 그것이 관련이 없다는 게 어떤 論理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까? 原子力事業하고 연구하고 관련이 없다니 연구없는 事業이 어디있으며 事業하는데 연구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장난도 아니고...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제가 현재까지 事務的으로 報告가 없다고 하긴 그랬습시다마는...

○趙洪奎委員 모르신다면 모르시는 것이지 이제 基本計劃이 아닙니까?

○委員長 金瑑泰 그 정도로 하시지요. 趙洪奎委員... 朴委員님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다음은 盧武鉉委員님께서 大統領의 韓半島 非核化宣言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國防部長官이 말씀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科技處長官이 答辯드리겠습니다.

盧委員님의 質疑를 요약하면 첫째, 사용후 核燃料를 政府에 다시 再處理 사용할 것인가 與否

둘째, 核廢棄物處分場 建設時 再處理施設의 同時建設計劃 및 이와 관련한 研究費內譯

셋째, 國內에서 사용후 核燃料를 再處理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대책

넷째, 日本의 再處理施設建設推進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再處理問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다섯째, 再處理施設拋棄宣言은 原子力政策의 轉換인지 아니면 原子力 技術自立拋棄인지

여섯째, 韓半島 非核化宣言은 새로운 査察의 수용이 아닌가에 대해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선 核燃料 再處理와 관련한 原子力政策을 말씀드리면 盧委員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原子力發電所를 도입하면서

美國 佛蘭西 및 캐나다 등과 原子力雙務協定을 맺고 있으며 同 雙務協定上 우리나라는 原子力發電所 導入國으로부터 事前同意 내지 事前協議 없이는 核燃料의 再處理가 불가능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1957년에 國際原子力機構 즉 IAEA에 가입하면서 原子力의 平和的 利用을 전지해 나가겠다는 國際的 약속을 한 사실로도 우리나라의 原子力政策은 原子力의 平和的 이용에 한하여 原子力을 開放하고 있으며 오늘 大統領의 宣言은 이러한 政策을 강력히 천명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앞으로 核燃料의 再處理 및 濃縮施設을 國內에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再處理의 經濟的 妥當性이 없지만, 앞으로 우라늄價格이 상승하여 使用後 核燃料 再活用の 필요성이 擡頭될 경우는 日本을 비롯한 西獨 스위스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英國이나 프랑스 혹은 蘇聯으로 再處理를 위탁하여 再活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核廢棄物處分場 建設時 再處理施設計劃과 이와 관련한 研究費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核廢棄物處分場 建設에 있어 아직까지 核燃料의 再處理를 목적으로 한 建設計劃은 없으며 다만 사용후 核燃料를 안전하게 長期的으로 저장하는 對策으로서의 關聯研究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處分場調查研究費 放射性廢棄物의 減容積化 技術開發 放射線低下技術 등의 研究費를 투입하여 왔으며 關聯研究費의 使用實績 및 決算書는 별도로 盧委員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용후 核燃料의 再處理拋棄時 사용후 核燃料의 處分對策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후 核燃料는 추후에 再活用の 필요성이 제기될 때까지 안전하게 임시 저장하는 방법과 또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라늄의 價格變動으로 再處理의 經濟的 타당성이 있을 때까지 海外에서 處理 活用하는 것 등이 우리의 사용후 核燃料에 대한 處分對策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日本의 경우 非核原則下에 核燃料의 再處理施設推進과 關聯問題를 제기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日本은 이미 많은 40基의 原子力發電所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후 核燃料

로부터 나온 플루토늄을 核燃料로 사용하는 파이로트型 高速增殖爐가 建設 運轉중에 있어 再處理에 대한 經濟的 妥當性이 이미 國際的으로 인정된 바 있고 67年에 非核3原則 발표와 더불어 核武器非擴散을 위한 國內의 諸般制度를 갖추으로써 國際的으로 신뢰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日本의 核燃料의 再活用 문제에 대해서는 國際社會로부터 문제삼고 있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再處理施設 拋棄宣言은 우리 나라의 原子力 政策의 일대 전환인가에 대해 質疑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核武器 非擴散條約加入國으로서 原子力을 平和的 목적에만 국한하여 활용하고 關聯政策을 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政策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再處理 및 濃縮施設의 非保有를 선언한 것은 혹시 이를 가짐으로 해서 國際社會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불필요한 核武器擴散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의 原子力平和利用政策을 對内外에 확고히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런 施設의 보유로 해서 經濟的 또는 技術的 이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北韓 核武器開發을 포기시키고 韓半島에서의 核戰爭豫防이 經濟的 이득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宣言과 같은 政治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받고 있는 核施設 및 核物質에 대한 査察水準과 이번 宣言이 새로운 査察의 수용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1975年 國際原子力機構 즉 IAEA와 核非擴散條約加入 및 全面核安全協定에 서명한 이후 IAEA의 核査察官이 來韓하여 年平均 5回 정도 周期的인 核査察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査察基準은 原子力施設의 內容規模 核物質保有 現況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宣言은 IAEA査察의 遵守意志를 강력히 재천명해서 北韓으로 하여금 査察을 수용하도록 중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金瑋鎬委員 原子力委員會라는 機關이 있지

요?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예.

○金瑋鎬委員 委員長이 누구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副總理입니다.

○金瑋鎬委員 그러면 委員에는 科技處長官이 포함되니까, 안되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포함됩니다.

○金瑋鎬委員 原子力委員會 任務는 뭐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原子力政策에 대한 全般的인 것을 決定합니다.

○金瑋鎬委員 原子力利用에 대한 政策의 決定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利用·研究 여러가지가 다 있습니다.

○金瑋鎬委員 그런데 30基가 되었던지 50基가 되었던지 原子力利用에 관한 發電關係를 原子力委員會에서 한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 그 말입니까? 이 중요한 政策을.....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事務的으로 아직 報告가 안 올라왔고 原子力委員會에 回附가 되지 않았습니다.

○金瑋鎬委員 貴下가 構成員의 멤버중 하나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모르면 모른다고 할 일이지...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아직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金瑋鎬委員 이 중요한 政策決定을 原子力委員會에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아직 原子力委員會에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金瑋鎬委員 構成員 멤버중의 하나 아닙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原子力委員입니다.

○金瑋鎬委員 委員이면 30基가 되었던 50基가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런 政策決定을 하는데 委員會 協議를 한번도 안거켰다 그 말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金瑋鎬委員 안올라왔다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發表가 되는 것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鎭炫 그것은 動資部의 계획입니다.

○金瑋鎬委員 이런 중요한 문제는 動資部의 所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아니 거짓말을 하다니요?

○金瑋鎬委員 거짓말이 아니예요?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어디 내가 거짓말을 해요? 原子力委員會 안올라와서 科技處長官이 모르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金瑋鎬委員 原子力委員會를 한번도 안열었다는 것 아닙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原子力委員會는 227次까지 열었습니다. 動資部計劃의 새 原子力發電計劃事業은 原子力委員會에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金瑋鎬委員 原子力利用에 관한 政策決定이다 그 말입니다. 原子力利用 第1項에 原子力利用의 政策에 관한 사항…….

○委員長 金瑑泰 金瑋鎬委員! 되었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저는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거짓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金長官! 되었어요.

○金瑋鎬委員 이 사항에 대해서 原子力委員會는 한번도 召集 안했다 그 말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召集이 안되었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金長官! 내려가세요.

○金瑋鎬委員 내려가지 말아요!

○盧武鉉委員 제가 그 문제 말고 補充質疑 있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金長官! 다시 올라와서 盧武鉉委員…….

(場內騷亂).

뒤에 무슨 말씀인지 지금 다 알아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됐어요.

盧武鉉委員 補充質疑하세요.

○金瑋鎬委員 發言中인데 왜 내려가요?

○委員長 金瑑泰 내가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盧武鉉委員이 지금 補充質疑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金瑋鎬委員 중요한 政策決定을 하는데 原子力委員會 召集도 안하고 政府에서 2030년까지 50基를 한다 하는 政策決定發表가 나올 수

있나 그 말입니다.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原子力法 第2章 原子力委員會 第4條 第1項에 原子力利用의 政策에 관한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글썽, 맞습니다. 原子力委員會規程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動資部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50基에 대해서는 아직 原子力委員會에 안올라왔다 이 말씀입니다.

○金瑋鎬委員 제 말씀 들어 보세요. 原子力利用의 政策에 관한 사항을 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한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原子力利用이라는 것은 發電關係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 중요한 政策決定을 하는데 原子力委員會에서 協議 안하고 決定할 수 있는 것입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아니 존경하는 金瑋鎬委員님! 그것은 아주 全的으로 그 말씀이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물으신 것이 原子力發電 50基에 대해서 저보고 아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原子力委員會에 回附가 안되었으니까 관련이 없는 저로서는 모르지요.

○趙洪奎委員 原子力委員會 幹事が 科學技術處所屬이지요?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맞습니다.

○金瑋鎬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原子力發電 관계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動資部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배버렸습니다. 그 말씀 알겠어요. 朴英淑委員께서 아주 정중하게 물어 보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公害問題라든가 生態系 변화라든가 엄청난 國民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經科委員長을 했고 柳岐相 政策委議長도 經科委員長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속에 입력되어 있고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原子力發電關係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動資部에서 합니다”라고 아주 말을 싹 배버렸습니다.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原子力委員會라는 이런 組織이 있고 이런 機關이 있습니다. 이런 政策決定은 여기서 해야 할 일인데 그동안 한번도 協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具體的으로 알아 봐서 答辯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하는 것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技術的인 科學的인 것 이것만 결정을 하고 이것만 研究하는 것이치 全的으로 動資部所管입니다.” 이렇게 答辯하셨다 그 말입니다. 動資部所管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綜合的인 政策決定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法에 의해서 原子力委員會에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具體的으로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原子力委員會에 전혀 회부한 바도 없고 協議한 사항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一方的으로 발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의있게 答辯하는 것하고 제 소관이 전혀 아닙니다……. 왜 科技處長官의 所管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태도에 基本的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시겠습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지금 문제는 原子力委員會에서부터 제기가 되었으면 당연히 지금 金瑛鎬委員님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다만 朴英淑委員님도 그러시고 趙洪奎委員님도 50基에 대해서 어느 모르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所管이 아니고 그것은 動資部所管이고. 原子力委員會까지 왔으면 당연히 저희도 알지요. 아직 原子力委員會까지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事務的으로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趙洪奎委員 그렇게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柳峻相委員 金長官! 조금 진정하고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崔珥圭副總理가 原子力委員會의 委員長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만약에 50基가 2030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原子力委員會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면 이 政府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科技處長官이 물론 그런 것이 報告 안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政府가 많은 民願의 소지가 있고 國民的 관심사인…… 어느나라 같은 경우는 國民投票로 결정해서 原子力發電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科技處長官께서는 이런

委員會가 開會되지 않았다 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돼요.

하루속히 副總理가 이 原子力委員會를 소집해서 아마 豫算審議하기 전에 이 部門에 대해 명쾌하게 原子力法에 明示된 原子力委員會를 소집 해가지고 이 會議를 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해서 2030년까지 50基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發表를 누가 했느냐 政府의 누가 했느냐 그 責任者가 누구인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副總理 答辯해 보세요.

○委員長 金瑛鎬 우선 科技處長官 答辯하실 말씀 있습니까?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없습니다.

○委員長 金瑛鎬 盧武鉉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金長官 하단 하도록 하고 그리고 副總理 나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盧武鉉委員 補充質疑하세요.

○盧武鉉委員 오늘 大統領宣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제 質疑를 드리기 전에 그렇습니다. 옆에서 質疑와 答辯을 지켜 보았는데 原子力發電所 50基가 앞으로 더 建設될 예정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朴英淑委員님께서 質疑를 드렸을 때 너무 所管이 아니라는 데에만 매달려서 答辯을 너무 形式的으로 하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動力資源部長官이 그것을 發表하고 이미 모든 國民들이 알고 있는데 실사 原子力委員會에서 거론이 되었건 안 되었건 原子力委員會 所屬委員이 되고 있는 科技處長官이 거기에 대한 情報를 가지고 계시면 성실히 答辯하실 수 있는 것이고 情報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이미 그것은 자기 職務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으로 職務에 대한 懈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副總理가 答辯하실 것이므로 그 정도로 제 所見을 피력하고요. 再處理 포기라는 점 과거의 非核化라는 얘기는 어느 速記錄에서 韓國이 이미 우리 韓國의 政策으로 삼고 있다는 報告를 한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再處理 포기에 관해서는 經濟科學技術의 自立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어 이것이 대단히 非現實的인 문제

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質疑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편 관점을 바꾸어서 政府 입장에서 이것을 선의로 본다면 첫째 南北對話에서 北韓의 非核地帶化 요구에 대응해서 명분의 優位를 확보함으로써 北韓으로 하여금 核査察을 수락케 하고 나아가서는 核開發 포기를 유도하려는 어떤 그런 戰略으로 이해 되기도 하는 面이 있었습니다. 答辯은 과연 그랬습니까 마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몇 가지의 문제는 남습니다. 北韓의 核雨傘에 대한 지금까지의 태도를 지켜볼 때 과연 南韓이 核雨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 그냥 實效性이 있을 것이냐 이 宣言으로 과연 北韓이 움직일 것이냐 태도를 바꿀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있고 두번째 原子力燃料의 자금과 經濟性 그리고 原子力技術의 自立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 이를 위해 하나의 목표가 커다란 장애에 부딪힌다..... 조금전에 動資部長官께서 答辯하실 때에도 技術自立이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科學技術處長官이 말씀하실 때에도 高速增殖爐 말씀을 하셨습니다. 高速增殖爐라는 것은 再處理技術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長官께서는 日本에 위탁해서 加工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재처리를 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日本의 재처리능력은 막대한 量의 再處理能力과 日本의 軍事大國化傾向에 비추어서 日本의 核武器開發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美國의 構圖에 따라서 南韓과 北韓만 武裝解除해 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韓國國防研究院 先任研究員들의 論文도 대단히 문제는 크게 제기하는 말하자면 核政策은 南·北韓間의 安保次元에서만 논의가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과 아울러 문제가 역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日本의 核武器開發可能性에 대한 어떤 擔保措置를 美國과 韓國이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앞으로 豫算過程에서나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입니다. 물론 國防部長官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는 어떻게든 나는 이 宣言過程에서 美國의 영향력이 행사되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韓

國의 原子力技術의 對日本依存과.....

○委員長 金瑑泰 盧武鉉委員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說明이 되고 있으신데..... 補充質疑를...

○盧武鉉委員 예, 補充質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答辯이 길어질텐데요. 조금 전에 北韓의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擔保措置에 대해서 물었고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質疑를 해놓고 答辯이 원체 잘 나오니까 어느 정도 質疑를 했던 취지를 가다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금방 끝낼게요.

國防과 科學技術의 對日本 依存에 대한 韓國의 앞으로의 對策은 어떤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質疑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委員들이 다 시간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豫算審議때 하나는 國防部長官이 하나는 科學技術處長官이 答辯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科學技術處長官 金鎮炫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瑑泰 副總理 答辯은... 副總理도 아마 答辯이 시간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環境處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處長官 權壽赫 環境處長官입니다.

張石和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드리겠습니다.

張委員님께서 環境處所管 90年度 豫備費 사용의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環境處가 90年度에 사용한 豫算費는 總 6億2,195萬7,000원입니다. 이것은 90年1月4日字로 環境廳이 環境處로 昇格되면서 職制와 定員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經費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된 내역은 6個 地方環境出張所 新設에 필요한 사무실賃借保證金과 실험 단속장비 구입 經費 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음은 公報處長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處長官 崔昌潤 公報處長官입니다.

먼저 盧武鉉委員께서는 韓國自由總聯盟이 새 秩序새生活運動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참여했는지 具體的 明細를 밝히라고 副總理께

質疑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答辯드리겠습니다.

自由總聯盟은 昨年 10月13日 特別宣言을 契機로 새秩序새生活 實踐運動을 汎國民的인 實踐運動으로 擴散·發展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一翼을 擔當하고자 그해 年末까지 여러가지 活動을 展開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公報處에서는 2億9,300萬원을 支援한 바 있습니다.

具體的 活動을 말씀드린다면 犯罪와 無秩序 追放運動에 참여하기 위해서 大都市 地域이 중심이 되어 自律防犯巡察隊를 구성하기도 했고 都市廣犯地域에 대한 防犯巡察活動도 展開 하였습니다.

아까 內務部長官께서도 答辯에서 말씀하셨듯이 社會的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犯罪·無秩序追放運動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秩序새生活運動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國民的 同參을 촉구하기 위해서 팜플렛이라든가 스티커 등 각종 자료를 제작해 왔고 또 질서지킴이 街頭캠페인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張石和委員님께서 90年度에 公報處에서 職制改編에 따른 豫備費를 8億3,000餘萬원을 사용하였는데 職制改編關聯經費는 다음年度 豫算에 계상하여 國會의 審議를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長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0年度에 公報處에서 職制改編과 관련하여 8億餘원의 豫備費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해 12月19日 國會議決을 거쳐 同年 12月30日에 公布된 政府組織法 改正에 따라서 1月3日附로 文化公報部가 文化部和 公報處로 분리가 된 데 기인합니다. 여기에 追加所要되는 經費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職制改編과 관련한 豫算은 다음年度 本豫算에 반영하여 國會의 審議를 받은 후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政府組織法改正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國會通過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더 서둘러서 法改正이 되었더라면

豫備費使用을 안해도 되었겠습니다. 그러하지 못한 데 대해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瑢泰 副總理! 答辯 준비 되었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예.

○委員長 金瑢泰 副總理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입니다.

原子力發電 50基 建設計劃은 政府로서 그런 計劃을 정한 바 없습니다. 다만, 電力事業法에 의해서 每 10年 周期로 하는 長期電力需給計劃을 動力資源部長官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91年度부터 2001년까지의 長期電力需給計劃에 의하면 原子力發電所는 9基가 建設되도록 長期需給計劃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전에 動力資源部長官이 여기에서 答辯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原子力委員會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電力의 長期需給計劃은 動力資源部長官이 電力事業法에 의해서 정하고 구체적으로 原子力發電所가 建設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原子力の 安全問題도 原子力の 연구 등과 관련되어서 原子力委員會에서 審議를 해서 구체적으로 建設計劃이 됩니다. 때문에 현재 長期需給計劃은 電力事業法에 의해서 動力資源部長官이 確定 告示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瑢鎭委員 電力長期計劃을 세우는 것은 動資部의 固有所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原子力發電所 관계는 動資部의 單獨的인 결정으로서의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조사한 資料에 의하면 2030년까지 核發電所 50基를 新設하고 2006년까지 해서 18基를 새로 建設하도록 이렇게 확정되어 가지고 候補地까지 既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候補地의 住民들은 舉都的으로 舉面的으로 엄청난 저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해서 18基가 확정발표가 됐습니다. 候補地까지 말입니다.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그러니까 50基 計劃은 政府로서는...

○金瑢鎭委員 50基計劃중에서의 18基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朴英淑委員님께서 물어 보셨을 경우 科技處長官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성의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0基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50基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18基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50基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면 “대충 큰 테두리 안에서의 마스터 플랜이 50基 정도의 내외의 결정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18基는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候補地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地名까지 다 擧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社會的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다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答辯을 해야지 우리所管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다 딱 받을 때버린다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8基 확정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原子力委員會에 의해서 審議하고 政策決定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構成員 멤버중의 하나가 科技處長官이다 그 말입니다. 幹事는 科技處 實務者다 그말입니다. 이런 무성의하고 오만한 答辯態度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설혹 委員들이 잘 모르고 했더라도 國民 앞에 있기 때문에 國民 앞에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어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電力事業法에 의해 가지고 10年間을 周期로 하는 長期電力需給計劃은 動力資源部長官이 告示하게 되어 있어서 91년부터 2001년까지가 告示되어 있고 그것을 豫備的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動資部長官이 長期需給計劃으로 告示해서 91년부터 2001년까지 9基 2002년부터 2006년까지 9基 해서 18基는 政府의 計劃으로 告示를 했습니다.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50基 建設計劃은 88年 動力資源部の 用役에 의해 가지고 亞洲大學校 에너지문제研究所의 연구결과로 2030년까지의 50基 計劃이 研究所의 研究用役에 따른 연구결과로 나온 일은 있지만 政府의 計劃으로 확정된 것은 91년부터 2001年 기간중

9基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가 9基 이렇게 電力事業法에 의해서 動力資源部長官이 告示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原子力委員會 관례를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는 長期需給計劃은 動力資源部長官이 告示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具體的으로 個別 原子力發電所를 建設할 때는 原子力委員會에 上程을 해서 原子力研究 또 안전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原子力研究所의 審議를 거쳐 個別的 原子力發電所建設計劃이 확정되기를 때문에 長期計劃으로 公告되었기 때문에 原子力委員會에서는 아직 審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金瑛錫委員 그러니까 副總理 答辯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答辯하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어보았을 경우 50基라는 數值的인 것을 2030年代까지 물어보았을 경우 科技處長官은 研究機關에서 亞洲大學이 되었던지 漢陽工大가 되었던지간에 長期電力需給計劃에 의해서 2030년까지는 50基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밸런스가 맞는 것이다, 이렇게 研究機關에서 결정이 났지만 政府에서는 2006년까지 해가지고 18基는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訂正을 하고 答辯을 해주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50基라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뺌하는 答辯態度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 18基는 최소한도 原子力委員會의 協議를 거쳤을 것입니다. 短期計劃이기 때문에... 그것도 거치지 않았다면 動資部라든지 政府의 無責任한 짓거리다 그 말이야! 違法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原子力 利用에 관한 政策決定은 法에 의해서 原子力委員會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2006년까지 18基의 事業計劃을 確定되었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政府에서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알겠습니다.

○趙洪奎委員 副總理는 아는데 科技處長官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 答辯 태도가 어디 있어요?

○金台植委員 委員長! 이렇게 해 주세요. 進행을 하기 위해서 議事進行 兼 말씀드릴

리겠습니다.

세벽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國政을 審議하면서 政府側을 代表한 國務委員은 國務委員대로 또 國民을 代表한 國會는 國會대로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이마를 맞대고 하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科技處長官하고 저하고는 個人的으로 人間的으로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제기함으로써 科技處長官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겠고 우리 國會의 權威도 찾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50基의 原子爐를 앞으로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와 관련된 科技處長官의 答辯 태도나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提起했습니다.

지금 國民들의 정서는 原子爐의 原子力發電所의 必要性을 長期的인 에너지需給計劃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當局의 고충이랄지 이런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環境問題 또는 生態系 破壞問題 또는 反核化를 기대하고 있는 國民의 정서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 가지고 대단히 尖銳化된 문제의식이 민감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政府側의 성의있는 설득과 거기에 따른 政策의 추진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政府가 풀어야 할 숙제중의 하나다 이렇게 평소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제기는 오히려 政府側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對國民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방향에서 오히려 더 자상하고 더 협조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이렇게 봅니다.

原子力委員會라는 것이 動力資源部 自體가 長期的인 에너지需給計劃을 세우지만 그 需給計劃을 추진하는 技術과 安全도와 모든 문제의 추진은 原子力委員會에 속하여 있는 科技處의 기술과 협조 없이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모르고 제

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사람이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 말씀은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됐든간에 國民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質疑를 해 주신 委員에 대한 예의로 봐서도 그렇고 또 國民을 받드는 자세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科技處長官의 답변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사과를 해 주시도록 委員長이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原子爐 50基 문제에 대해서는 質疑할 수 있는 時間的 여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答辯은 副總理의 答辯으로 우리가 일단 접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돼 가지고는 어떻게 國會가 운영되겠습니까?

國會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받드는 公職者의 태도를 중시하는 그런 機關이고 그런 장소인데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가 국민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좋은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科技處長官이 감시 나오셔서 “내 答辯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다. 그러나 내용 자체는 사실이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科技處長官이 할 수 있는 答辯은 바로 科技處長官의 傘下에 있는 參謀들의 자료제공에 의해서 副總理가 그대로 答辯을 했습니다.

이것은 科技處長官이 문제의 성질을 회피하려 했거나 또는 파악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國會의 權威도 존중해 주고 또 科技處長官이 의도적으로 실수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테니까 이렇게 해서 科技處長官이 사과해 주시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朴 實委員 나는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과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同僚委員이 제기를 했는데 분위기로 봐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니깐 個人的으로는 節次上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도 앞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原子力委員會의 會議錄이 우리가 필요해요.

原子力 利用에 관한 原子力委員會를 만들었

을 때는 原子力에 관한 문제의 重大性에 감안해서 委員會를 해가지고 電力需給計劃을 추진하는 勳資部 입장에서는 당연히 값싸고 또 자기 나름대로 안전한 에너지源으로서 原子力發電所를 많이 세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原子力委員會라는 것은 合議體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오는 環境이라든가 여러가지 技術的인 문제 物理學的인 문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原子力 利用에 관한 原子力委員會를 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基에 대해서는 앞으로 政策的인 방향이 그렇다 또 연구 결과가 그렇다 해서 그런 것은 남득이 갑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왕에 18基 아니면 또 9基라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原子力委員會의 會議錄, 과연 原子力委員會가 열렸느냐 이것은 우리 國會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資料를 會議錄을 豫算審議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어떻습니까? 이것 이 정도로 하지요?

○委員長 金瑑泰 資料를 政府側에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副總理兼經濟企劃院長官 崔珪圭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政府側에서 委員님들 말씀하시는 뜻을 잘 유의를 하셨다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府側의 答辯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0年度歲入歲出決算 및 1990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에 대한 質疑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두 가지 案件에 대한 質疑를 모두 終結할 것을 宣布합니다.

○蔡映錫委員 이제 우리 決算特委가 90年度決算檢査와 報告를 받았고 또 심도있는 審議를 했습니다.

그리고 豫備費支出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제 委員長이 宣布하신 대로 質疑나 答辯이 모두 끝나서 이 決算報告를 접수 하느냐 또 豫備費支出을 承認하느냐 하는 우리 豫決特委의 議決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熟識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새벽입니다마는 아직 兩黨 幹事와 委員長間에 충분히 의사 소통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協議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民主黨의 입장도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되어서 여러가지 事案을 감안해서 잠깐 委員長께서 停會를 해주시면 어떻 가 하는 것을 여러 先輩 同僚委員들께 말씀드리고 별 다르게 異議가 없으시다면 委員長님이 受諾하셔서 잠깐동안 停會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議事進行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瑑泰 委員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與野間의 절충을 위해서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한 10分 정도 停會를 하지요. 停會를 宣布합니다.

(1時12分 會議中止)

(1時38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瑑泰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討論을 하겠습니다.

먼저 盧武鉉委員 反對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밤늦은 시간에 또 反對討論으로 더 피곤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質疑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비단 꼭 野黨委員들만의 問題提起가 아니라 與野委員들이 제기하셨던 문제까지 아울러서 함께 짚을 것은 함께 종합해서 문제를 몇가지 지적하고 그 문제의 지적을 통해서 90年度 決算과 豫備費使用承認案에 대한 反對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돈 또는 숫자를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效率性이 먼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討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豫算이 適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타당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法 취자의 오랜 경험은 적법성이 확보되지 아니하고는 궁극적으로 효율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세한 法 規定과 原理를 통해서 豫算과 決算을 적법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年 豫算의 집행은, 그리고 豫備費

의 사용은 몇 가지 다음과 같은 違法性和 不當性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論難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결국 安全企劃部法과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相當部分 豫算에 관한 審議가 不可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法律은 違憲의 法律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憲法을 보면 國會의 豫算審議權이 보장되어 있고 이 豫算審議權에 관해서는 憲法上 法律의 規定에 의해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아무런 根據規定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律에 의해서 憲法에 規定된 豫算審議權을 배제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 法은 違憲의 法律들입니다. 이 違憲의 法律에 이해서 豫算의 審議權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豫算과 豫備費의 사용을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違憲의 法律이라 할지라도 法律은 法律이고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서 規範力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安全企劃部法과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은 그 자체도 不法的으로 확대 적용되어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特例法 規定들이 있다고 해서 특히 그 중에서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의 規定이 있다고 해서 豫備費라는 그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法 規定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를 보아도 아무리 해도 豫備費에 대해서 特例가 있었으면 있었지 豫備費가 本豫算이 되고 本豫算이 豫備費가 된다는 그런 規定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安企部 豫算을 보면 당초의 編成豫算은 164億餘원입니다. 그런데 豫備費로 사용한 것이 2,612億원입니다. 열 배가 훨씬 넘는 豫備費입니다. 어떤 機關이 예측할 수 없는 또는 豫算을 초과한 支出이 본시 예측할 수 있었던 豫算의 열 배가 넘는 機關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合法的으로 運營되는 政府機關이 자기의 業務를 10분의 1밖에 예측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法을 확대해석해서 모든 豫算을 豫備費로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執行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不法입니다. 이 法의 자의적인 해석이요, 확대해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法의 規定도 없이 靑瓦臺에 대한 監査가 전혀 회피되고 있습니다. 監査院의 監査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물론 書面監査를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한번도 監査를 한 일이 없습니다. 監査를 당연히 해서 報告를 했어야 되는데 靑瓦臺에 대한 監査院의 監査가 결여된 決算의 報告와 豫備費使用承認案의 제출은 不法의 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內譯없는 報告의 違法이 있습니다. 勞動部 豫算을 보면 勞政事業推進費 情報費로서 2億9,700餘萬원, 外務部에 約 78億餘원 政務活動特殊事業費라는 이름입니다.

그외에도 이와같은 豫算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副總理는 各部 豫算에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소정 安保豫算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安保 豫算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역도 없이 근거자료도 없이 豫算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豫算을 報告할 수 있느냐…… 法의 規定이 없습니다. 물론 項目의 성격상 그렇다고 하지만 項目의 성격상 이와같은 特例가 인정될 수 있는 아무런 法的根據도 명문의 근거도 그 원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副總理께서도 이 法理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政治的으로 答辯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本委員으로서 違法이라고 단정해서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豫算의 執行의 不法은 豫備費로 쓸 수 없는 것을 豫備費에서 지출한 違法이 있습니다. 89年 決算審議時에 豫決委 專門委員의 檢討報告書를 보면 頽廢業所團束經費, 敎職政策改善事業費, 勞使紛糾對策費, 기타 다수의 費用들이 豫備費에서 사용할 수 없는 項目이다, 이같은 項目들은 그 機關들의 당연한 業務로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이므로 결코 豫備費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다라고 지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年 豫算에서 방금 지적 했던 이 費目들은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측할 수 없는 經費 또는 豫算을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豫算을 초과

한 經費라고 볼 수 없는 政府機關의 日常的 活動에 속하는 繼續的 經費 當연한 經費를 豫備費에서 편의상 끌어다 쓴 違法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產特會計豫算의 編成과 執行에 違法이 있습니다. 産業災害補償保險特別會計에서 廳舍建立費와 勤勞監督官의 情報費 그리고 집기구입비 등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一般行政經費 이 청사와 勤勞監督官의 情報費나 집기구입비 등은 一般行政에도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 產特 運營에 사용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구분한다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겠습니다가마는 89年 4月1일부터 적용되는 改正된 產災保險法에 의하면 產災運營에 필요한 一般行政經費는 一般豫算에서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도 產災運營에 필요한 많은 經費를 一般會計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一般會計에서 產特에 豫算을 전입시키고 또 運營費를 부담해 줄 수는 있어도 產特에서 一般會計에 관한 經費를 부담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90年度 監査院의 監査報告書에서 명확히 지적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 決算에 제출된 것입니다. 된 그 決算結果가 오늘이 國會에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監査院의 지적과 같이 역시 이 國會에서도 不法임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年 92年 豫算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一般會計에서 產特會計轉入金을 대폭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89년에 10億이던 것을 90년에 70億으로 91년에 89億으로 92년에 101億으로 增額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각 項目上에서 一般會計 經費를 產特에 부담시킨 것을 一般會計에서의 產特 轉入金으로 해서 다 補塡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一般會計에서 補塡해준다는 것과 豫算費目이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또 補塡받을 것은 補塡 받아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法律上 모든 行政費用은 產特에 관한 行政費用이라 할지라도 一般會計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產災保險法 第2條의 2의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違法한 豫算의 編成과 執行임을 지적해 둡니다.

여섯번째 政府가 國會에 대한 約束을 違反한 部分도 있습니다.

89年 國政監査時에 바르게 살기運動協議會가 使用하는 事務室의 59%에 해당하는 169個의 事務室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務室을 無償으로 使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89年 國政監査時에 지적이 되어서 內務部長官은 앞으로 自體 事務室을 확보하고 또는 有償 사용하도록 단계별로 措置하겠다고 答辯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0年 이 決算資料를 보면 전혀 이 점에 관해서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決算書上에 數値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有償使用을 했더라면 決算의 結果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을 또는 補助金이라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문제를 提起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문제는 역시 약속위반의 문제는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補助金과 自由總聯盟 등에 대한 補助金에 관한 92年度 豫算에서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 豫算準則을 위반한 部分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條項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豫算準則을 보면 補助金 豫算은 每年 축소할 것 그리고 豫算要求時에 축소 계획을 첨부해서 補助金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準則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補助金의 增減內譯을 보면 이것은 每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增加하고 있습니다. 역시 豫算準則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委員님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했듯이 豫算의 轉用과 移用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또한 豫算制度 자체의 취지를 상당히 무색케 하고 있는 部分이 있습니다.

이 또한 크게 보아서 違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豫算의 浪費問題를 지적하겠습니다.

새질서생활에 관련한 豫算으로 國務總理室 外에 6個部處에서 補助金으로 14億5,000萬원 그리고 豫備費에서 66億1,000萬원해서 合計 80億6,000萬원이라는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豫算은 90年10月13日 大統領이 犯罪와의 戰爭을 宣布하고 그 宣布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11月16日 大統領 결재를 得해서 집행된 것으로 書類上 나와 있습니다.

91年 國政監査節次에서 제출된 內務部の 資料에 의하면 앞에서 討論과정에서도 지적 되었습니다마는 그해 年末까지 두달정도의 60日 정도의 기간에 延參與團體 18萬個, 延人員 2,432萬3,000名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報告에 의하면 하루에 3,000個 團體 40萬名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웃지 못할 결론에 도달하고 이런 허구적인 數字야말로 허구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고 이 금액은 90年度 결식아동 1萬100名에 대한 급식비 18億1,800萬원, 그리고 공단폐수처리시설 59億5,000餘萬원, 示範託 兒所 建立에 10億餘원, 中小企業 技術開發事業에 58億정도, 遺傳工學센터에 58億 이처럼 엄청난게 중요한 費目的 중요한 國家事業에 책정된 豫算보다 훨씬 많거나 버금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금액임을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낭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운동에 지원된 地方費의 규모를 고려하면 아마 더 엄청난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道峰區의 豫算과 釜山 東區 豫算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 점은 앞으로 다시 따져져야 될 문제이고 어떠한 엄청난 낭비다.

우리 黨으로서의 盧泰愚大統領의 당시 犯罪와의 戰爭宣布는 당시의 政治的 목적으로 宣布된 對國民戰爭이라는 政治的 規定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費用은 따라서 그와 같은 政治的觀點과 합하여 낭비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이 비용은 政治的 의도에 따른 大統領宣言과 그를 뒷받침 하기 위해 全 行政機關이 총동원 되어서 벌인 政治性 展示行爲에 따른 國家的 낭비로서 결코 國民의 承認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追加豫算의 부당성에 관해서 指摘하겠습니다.

90年度 豫算에는 두번에 걸쳐서 4兆 7,663 億원, 비율로 보아서 本豫算 對比 2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追加更正豫算이 編成되고 執行되었습니다. 이 또한 豫算制度의 기능과 존재의의를 무색케 하는 사실상의 脫法行爲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追加更正豫算이 두번이나 편성되었을까, 그 이전 12年동안 前例가 없던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물론 政府의 答辯에 의하면 그 당시 歲計剩餘金이라고 하는 經濟的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政治的으로 이와같은 엄청난 규모의 追加更正豫算이 90年 1월에 이루어진 狀況은 合黨의 結果가 아니었다라면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감히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黨合黨을 政治的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결과 이와 같은 엄청난 잘못된 追加豫算을 낳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政治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政府의 90年 豫算은 憲法과 法律을 위반하여 집행되었고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커서 현저한 違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낭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것은 豫算審議 절차에 있어서 憲法과 國會法에 의해서 國務總理와 安全企劃部長 그리고 靑瓦臺秘書室長은 이 委員會에 출석해서 答辯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어느 條項에도 이 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므로 國會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 하는 아무런 例外規定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들이 이 國會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違法한 일이자 國民의 代表機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단순히 政治的 공세나 問題提起를 위한 문제의 제기가 아니라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앞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충정으로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決算報告의 접수와 豫備費使用의 承認過程에 있어서 所屬政黨을 초월해서 豫算制度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民主主義의인 절차와 法治主義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與野가 뜻을 모아서 國會의 적법한 운영의 전통을 오늘 새로 수립하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反對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鎔泰 다음은 金洪萬委員 贊成討論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萬委員 먼저 副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들의 答辯에 대해서도 많은 委員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 委員들 자신도 어떠한 政策의인 質問이나 이 決算에 대해서 그 議題를 벗어나서 때로는 委員 스스로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人身攻擊의인 發言같은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時間關係上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本人이 오늘 1990年度 歲入 歲出 決算 및 豫備費 支出 承認의件에 관한 贊成討論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0年度 우리 經濟는 對內외의 경제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에서도 89年보다는 높은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國際收支나 物價面에서는 相對的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經濟成長面에서는 9.0%의 높은 實質成長을 이룩하였으나 國際收支面에서는 22億 달러의 經常收支赤字를 기록하였습니다.

物價面에서도 都賣物價는 前年對比 7.4%, 消費者物價는 前年對比 9.4% 상승하였습니다. 이와같이 經濟運用이 어려웠던 것은 民主化 과정에서 각계의 이해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經濟主體들의 經濟하려는 의지가 저하되고 經濟事情이 좋았던 지난 몇 年 동안 國內企業이 製造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政府는 90年度 財政運用에 있어 社會間接資本 擴充을 통하여 産業活動을 지원하고 製造業部門의 競

爭力 提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財政支出이 증가하여 온 것입니다.

90年度의 綜合財政收支가 1兆5,000餘億원의 赤字를 기록하였습지만 이는 既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동안 소홀히하여 왔던 財政機能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政府가 90年度에 編成된 豫算을 대체로 차질없이 執行하였다고 本人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本人은 決算審議過程에서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本委員의 견해를 말씀드리으로써 90年度 決算 및 豫備費使用을 접수하고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稅收推計의 부정확으로 인해 90年度 3兆원 이상의 과다한 歲計剩餘金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여러 同僚委員들의 지적이 있었습지만 이러한 歲計剩餘金의 발생은 歲入推計의 근거가 되는 巨視經濟指標의 豫測值와 實績值 간에 차이가 나타났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政府는 보다 정확한 經濟 전망치의 예측능력확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國家安全保障活動을 위한 豫備費支出額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豫備費가 당초 취재대로 예측할 수 없는 經費에 支出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 다.

이에 대해 本委員은 90年度에는 國際情勢의 급변에 따라 安全保障活動을 위한 豫備費가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豫備費중 일부 經費가 반복되고는 있으나 이는 사전에 그 支出所要와 經費內譯이 미확정 상태에 있어 당초 豫算上의 그 소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財政의 방만한 운영으로 綜合財政收支赤字가 발생하였다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冒頭에서 언급한 이와같은 지난 數年間 긴축재정의 지속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간접자본부문 등 각 부문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財政機能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財政收支赤字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國民住宅基金에서 庶民住宅建設을 위한 長期融
資支出이 增加하고 糧穀管理基金의 경우에도
糧穀證券의 발행이 불가피하게 늘어났기 때문
입니다.

네번째, 基金制度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基金運營制度를 改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
습니다. 이에 대해 本委員도 그 동안 基金
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改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政府가 이에 대한
問題點을 인식하고 類似基金의 統·廢合
政策을 추진하는 등 基金制度 改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行政府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監査院
의 決算檢査過程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물론
委員 여러분께서 本 委員會에서 지적하신 사
항 등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앞으
로는 그와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制度改善을 포함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與野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

本人의 경험으로 보아서 90年度 決算이
만약 접수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될
政府豫算執行上의 문제라든지 혼란발생으로 國
家財政運用に 크나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그러한 事態가 발생되어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은 여러 委員님들께서 '90年度 決算
및 豫備費支出을 滿場一致로 接受하고 承認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各
常任委員會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與野 滿場一
致로 可決되어 왔음을 강조드리면서 本委員의
贊成發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塔泰 이상으로 討論을 終結하겠습니다.

討論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1990年度 豫
備費支出承認의件을 表決하겠습니다.

表決은 起立表決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을 表決하
겠습니다.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反對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 44人중 贊成 30人, 反對 14人으로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0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件을 表決하
겠습니다.

1990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件에 대해서 贊成하
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反對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 44人중 贊成 30人, 反對 14人으로
1990年度 豫備費支出承認의件은 原案대로 可決되
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 여러분!

그 동안 1990年度 歲入歲出決算 및 豫備費支
出에 대한 審議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監査院長과 副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政府側에서는 그 동안 여러 委員
님들께서 開陳하신 高見을 바탕으로 다음年度
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指摘되거나 是
正되어야 할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施政에 反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議事日程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第6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11月12日 午後
2時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時9分 散會)

○出席委員

金 塔 泰	權 達 洙	權 海 玉
金 瑾 洙	金 佑 錫	金 仁 基

監 查 院 長 金 永 駿

萬植源 基珪 濟圭 藏鎬 鉉實 載錫
 洪峻清 榮肯 仁仁 榮瑋 武敬 映
 金文徐 安李 李林 趙金 盧朴 李蔡
 榮珪穆 澈魯 熙雄 英秀 植武 午奎
 晉昇相 五光 雄茂 富哲 台錫 亨洪
 金柳徐 申李 李林 趙黃 金朴 朴趙
 淑俊載 國義 彬淵 文杓 度相 淑和 九
 長興承 榮景 起在 在熙 榮峻 英石 鳳
 金魯朴 申吳 李李 鄭洪 金柳 朴張 崔

○出席專門委員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吳 世 致
 立 法 審 議 官 張 旭 相
 立 法 審 議 官 姜 英 昭

○出席國務委員

副 總 理 兼 官 崔 珏 圭
 經 濟 企 劃 院 長 官 崔 浩 中
 副 總 理 兼 統 一 院 長 官 崔 李 李 玉
 外 務 部 長 官 李 李 淵
 內 務 部 長 官 李 李 萬
 財 務 部 長 官 金 李 春
 法 務 部 長 官 李 李 九
 國 防 部 長 官 李 尹 變
 教 育 部 長 官 李 李 寧
 文 化 部 長 官 李 朴 彥
 體 育 青 少 年 部 長 官 曹 哲 京
 農 林 水 產 部 長 官 李 鳳 瑞
 商 工 部 長 官 李 陳 弼
 動 力 資 源 部 長 官 安 崔 乘
 保 健 社 會 部 長 官 林 寅 寅
 勞 動 部 長 官 崔 林 彥
 交 通 部 長 官 宋 李 衍
 遞 信 部 長 官 李 李 銜
 總 務 處 長 官 金 權 鎮
 科 學 技 術 處 長 官 金 權 鎮
 環 境 處 長 官 金 權 鎮
 公 報 處 長 官 金 權 鎮
 政 務 長 官 (第 1) 崔 崔 炯 佑

○出席政府委員

建 設 部 次 官 李 相 龍

○監查院參席者